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786

발의연월일: 2021. 6. 14.

발 의 자:이수진 · 민형배 · 강병원

홍성국 · 김승원 · 강선우

오기형・야진비・이해식

홍정민 · 이용빈 · 황운하

박상혁 · 김영배 · 이용우

장경태 · 위성곤 · 이규민

정일영 · 조오섭 · 오영화

이동주 · 김상희 · 이광재

김경만 • 안호영 • 윤준병

임호선 · 김영주 의원

(2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군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 부사관이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물리적·심리적 분리 등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군의 조직적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본 사건을 계기로 하여 군 전반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안이한 수사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미온적인 처벌 등 총체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일반 수사기관과 법원에는 성폭력 범죄 전담 검사 및 경찰과 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하 고 있음.

그러나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전문 수사 및 재판인력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군에도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적용하여 성폭력 범죄 전담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을 두도록 강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228조의2 신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제2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8조의2(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관할관은 각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관할관은 각 군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의 군검사 및 제2항의 군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 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 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5조의2(성폭력범죄에 대한 전
	<u>담재판부) 고등군사법원 및 보</u>
	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성폭력
	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u>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u>
	<u>하여야 한다.</u>
<u><신 설></u>	제228조의2(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관할
	관은 각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성
	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
	도록 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해
	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은 각 군사법경찰관
	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
	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군검사 및
	제2항의 군사법경찰관에게 성
	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
	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
	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